



나요?

중심식의
매일 관리



식품 위생교육

[학습 참고 자료]



식품 관련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



1.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

1. 식품안전관리 정책 기본방향

1인 가구 증가 등 소비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(HMR), 배달음식,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
-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, 편의점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
- 탁·약주, 과실주, 맥주 등 시기별 주류제조업체 점검 강화
- 온도(냉장·냉동) 관리 등 식품의 유통·운송 단계 관리 강화

2. 사전 예고제

- 목적: 지도·점검 시 업계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
- 내용
 - : 지도·점검 시 1~2주 이전에 점검대상, 시기, 품목, 방법 등을 인터넷, 문자, 일간지 등으로 사전에 알림
 - 다만, 사전 예고 시 특정 일자와 시간, 점검업체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 금지
 -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특별점검 등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 가능
- 지도·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
 - 신속한 행정조치
 - 홈페이지 등에 업체 공개
 - 6개월 이내에 재점검 실시 → 재점검 결과에도 위반한 업체는 특별관리업체로 지정 관리
 - ▶ 재점검 시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
 - ▶ 즉시시정, 현장멸실 등 부득이 재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 제외

3. 안전관리

- 위해 우려가 높은(Risk-Based) 품목 및 검사항목 중심으로 수거 및 검사 실시

2. 지도점검 기본방향

1. 식품안전관리의 지도·점검 목적

■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

2. 식품안전관리의 지도·점검의 방향

- 배달음식, 가정간편식 등 온라인 식품 및 식품운송차량 등의 관리 강화
 - 배달음식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내의 위생불량 등의 행위 집중 점검
 - 도시락, 가정간편식, 밀키트 등을 제조·판매하는 업체 관리 강화
 - 무인식품취급시설(무인편의점이나 무인카페 등) 집중 점검
 - 프랜차이즈점과 편의점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,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의 여부 집중 점검
 - 식품운송차량 및 물류센터의 냉동·냉장식품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
- 명절, 나들이철 등 시기·계절별 성수식품을 집중점검
 - 설·추석명절: 한과류, 건강기능식품, 그리고 햇과일, 쇠고기, 조기 등의 농·축·수산물
 - 봄·가을 신학기: 학교집단급식소, 학교매점, 학교 주변 분식점, 문방구 등
 - 봄·가을 행락철: 고속도로휴게소, 기차역, 공항, 국·공립공원, 유원지
 - 휴가철(하절기, 동절기): 워터파크, 해수욕장, 스키장, 눈썰매장, 아이스링크장 등
 - 김장철: 젓갈류, 고춧가루, 절임배추 등
 - 성탄절·연말연시
 - : 케이크, 아이스크림케이크 등과 소규모 맥주업체에서 원료사용기준을 준수하는지와 보존료 등의 첨가 여부
- 키즈카페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 - 키즈카페, 애견 동물카페: 시설기준과 위생적 취급기준 및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의 준수 여부
 - 노인·장애인·산모 이용시설
 - : 위생적 취급기준과 종사자 건강진단 및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의 준수 여부
 - PC방, 스크린골프장, 만화카페: 영업장 신고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
 - 반복 및 고의·상습적 위반 업체: 법령 반복 위반, 소비기한의 위·변조,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의 여부
- 어린이 기호식품(영·유아식품 포함) 등의 제조업체
 - 제도가공기준 준수,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의 여부와 무신고, 시설기준, 위생적 취급기준 등의 준수 여부 등

3. 「식품위생법」과 최근 주요 개정 내용

1. 목적

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·증진에 이바지함

2.구성(총 13장 102조)

장	주요 구성	조항
제1장 총칙	목적, 정의, 식품 등의 취급	제1조~제3조
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	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,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, 화학적합성품 판매금지,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	제4조~제7조
제3장 기구와 용기 포장	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,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	제8조~제9조
제4장 표시	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	제12조의 2
제5장 식품 등의 공전	식품 등의 공전	제14조
제6장 검사 등	위해평가,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,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, 검사명령, 특정식품 등의 수입 판매 등 금지·출입검사수거, 식품 등의 재검사, 자가품질 검사의무, 식품위생감시원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	제15조~제35조
제7장 영업	시설기준, 영업허가 등, 건강진단, 식품위생교육,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, 위해식품등의회수, 식품등의이물 발견 보고 등, 위생등급,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, 식품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	제36조~제50조
제8장 조리사 등	조리사, 영양사, 교육 등	제51조~제56조
제9장 식품위생 심의위원회 등	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	제57조~제58조
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	동업자조합, 식품산업협회, 식품안전정보원	제59조~제70조의10
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제	시정명령, 폐기처분, 위해식품등의 공포, 시설개수명령, 허가취소, 품목제조정지, 폐쇄조치, 면허취소 등	제71조~제84조
제12장 보칙	국고 보조,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, 집단급식소, 식품진흥기금, 포상금, 정보공개, 권한의 위임 등	제85조~제92조
제13장 벌칙	벌칙, 양벌규정, 과태료 등	제93조~제102조

3. 「식품위생법」과 최근 주요 개정 내용

3. 주요 내용

- 식품제조·판매하는 영업자·종사자가 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고 완전하게 위생관리 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 → 식품영업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함
 - 식품의 생산·가공자, 수입업자, 도매상과 소매상 등 모든 취급자(이하 식품영업자)에게 주의 의무 부여
 - 준수여부 감독
 - 식품위생 교육 이수 의무(매년)

4. 기타 관련 법령

- 식품안전기본법
-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
-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
-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
- 식품산업진흥법
- 농산물품질관리법
- 주세법
- 학교급식법
- 먹는물관리법
-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

4. 최근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신설 내용

1. 목적

■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)

■ 식품등의 명칭, 영업소 명칭(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), 종류, 원재료, 영양성분을 포함한 성분, 내용량, 제조방법, 등급, 품질, 사용정보, 식품등의 제조연월일, 소비기한, 품질유지기한, 산란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

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

(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,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)

- 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 거짓·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
-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
-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
-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
-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
-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, 상표 또는 용기·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·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

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

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말하는 화학제품
-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 생활 별표2의 제11호의 학용품

4. 최근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신설 내용

2.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의 주요 내용

-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 - '공진단, 경육고' 등 한약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(공진환 등)을 사용한 표시·광고
- '건강기능식품' 문구나 도안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
 -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'환경호르몬', '프탈레이트' 등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·광고
 - 영양표시 기준에 따른 '무당류'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식품에 '무설탕' 및 '설탕 무첨가'
 -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에 '설탕 무첨가' 또는 '무가당'을 사용하는 표시·광고
 - '합성향료·착색료' 등 사용, '절단·압착' 등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에
 - '천연', '자연'으로 표현하는 표시·광고(영업소 명칭, 상표명은 제외)
 - 영업자 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(OEM) 위탁자와 관계없는 상표·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·광고
 - 객관적·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(슈퍼푸드, 당지수) 사용
 -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100%·Non-GMO 등을 사용한 표시·광고
- 다른 업체(제품)을 비방하거나,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이 우수(우량, 유리)하다고 하는 표시·광고
 - 조사대상, 조사기관 등 객관적 근거없이 '고객만족도1위', '국내 최초 개발' 등의 표시·광고
-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
 - 식품등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·광고, 성기·나체 등 성적 호기심 유발 문구 사용한 표시·광고

5. 주요 표시제도

1. 소비기한 표시제도(2023년 1월 1일 시행)

| 도입 배경

- 국제적으로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추세
 - 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혼란 방지
 - 폐기되는 식품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 가능

| 유통기한 vs 소비기한

- 유통기한: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·판매가 허용되는 기한
- 소비기한: 식품등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,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
→ 식품 안전에 초점

| 표시 대상

-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조·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에 소비기한으로 표기함

5. 주요 표시제도

1. 소비기한 표시제도(2023년 1월 1일 시행)

표시 방법

- 소비기한 표기법
 - "〇〇년〇〇월〇〇일까지"
 - "〇〇.〇〇.〇〇까지"
 - "〇〇〇〇년〇〇월 〇〇일까지"
 - "〇〇〇〇.〇〇.〇〇까지"
 - "소비기한 : 〇〇〇〇년〇〇월 〇일"
- 제조일+소비기한 표기법
 - "제조일로부터 〇〇일까지"
 - "제조일로부터 〇〇월까지"
 - "제조일로부터 〇〇년까지"
 - "소비기한 : 제조일로부터 〇〇일" → 제조일 별도 표시
-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: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 표시 위치 명시
 -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
 -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

5. 주요 표시제도

2.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

시행 목적

- 소비자에게 투명한 생산정보 제공하기 위함

표시 방법

- 기존: 달걀 껍데기에 '시도별 부호' + '농장명' 표시 *이미지 삽입
- 변경: '산란일자' + '생산자 고유번호' + '사육환경번호' 표시 *이미지 삽입
 - 산란일자: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, 채집한 날의 월일 4자리
 - 생산자 고유번호
 - :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
 - 사육환경번호

사육 환경	기준	표시 번호
방사	1마리/m ² (방목장에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)	1
평사	9마리/m ² (케이지·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)	2
개선케이지	0.075m ² /마리 → 13마리/m ²	3
기존케이지	0.075m ² /마리 → 20마리/m ²	4

5. 주요 표시제도

2.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

| 시행 시기

-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: 2019년 2월 23일부터 반드시 표시
 - 6개월 계도기간 운영으로 2019년 8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됨
 -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: 2022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표시
 - 표시 예외: 사육시설의 면적이 10m²미만인 영세농가 중 다음에 해당할 경우
 -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산란일자와 사육환경번호만 표시함
 -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인 경우, 표시를 면제함
 - 우편, 택배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가 필요함
 - 로컬푸드직매장 판매제품은 표시를 표시판에 기재하고 개별 달걀은 표시를 면제함
 - 비의도적으로 산란일자 표시가 누락되거나 지워진 달걀은 행정처분을 면제함
 - 기계작동 오류로 인한 표시누락, 유통과정 중 결로 등으로 인해 표시가 지워진 달걀이 최소포장단위(10~30개/팩)중 10%이하로 존재하는 경우, 미표시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제함(인정범위: 10개/팩→1개, 15개/팩→2개, 30개/팩→3개)
 - 팩포장된 달걀의 경우, 1~2개 표시가 지워지더라도 나머지 달걀로 산란일자등 확인 가능한 점을 고려함

6. 최근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주요 개정 내용

1. 2024년도 개정 내용 속지의 필요성

식품안전관리의 동향을 파악하고 단속을 대비할 수 있음

2. 2024년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

-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·과징금 허용(별표23 Ⅱ 제3호의 표 제11호 라목)

현행	개정
1차 영업정지 2개월	1차 영업정지 7일
1차 영업정지 3개월	2차 영업정지 1개월
1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	3차 영업정지 2개월

-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 최소화

- 비대면 조사 거부·기피·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
(별표23 Ⅱ 제1호의 표 제8호, 제2호의 표 제7호, 제3호의 표 제7호)

-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

현행	개정
-	1차 영업정지 1개월
-	2차 영업정지 2개월
-	3차 영업정지 3개월

-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의 치즈 소분·판매 허용(별표15 제2호 자목)

- 1인 가구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

- 요트·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(제42조 제1항 제17호)

-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함

- 마리나 선박: 「마리나항만법」 제2조에 의거해 유람, 스포츠,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

6. 최근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주요 개정 내용

2. 2024년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

-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정비 (별표14 제5호 나목3) 라) 및 마), 별표17 제4호 나목, 다목 등)

- 시설기준 정비(범위 확장)

현행	개정
음용온도 관리, 살균등, 정수기, 온도계 부착	음용온도 관리, 살균등, 정수기, 온도계 부착,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, 내수성 재질, 원료보관 시설 구비

- 위생관리 영역 확장

현행	개정
재료혼합기, 급수통 등의 자판기 내부를 하루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	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

-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(별표17 제7호 사목)

- 간판에 업종을 구분 표시하는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음

- 단란·유흥주점은 「청소년보호법」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음

-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·사행행위·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 (별표14 제8호 가목1)에 바)

-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함

- 해당 시설

- ▶ 주사위·트럼프·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·기구
- ▶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
- ▶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

7. 식품제조·가공업체 등 안전관리

1. 지도·점검 기본방향

-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등 제조업체와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제조업체, 수출부적합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제조·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함
-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나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등 단속 필요가 높은 업체에 대한 출입·검사 등을 관리함
- 식품위생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함
- 연 1회 이상 정기·점검 등 식품조사처리업의 안전관리와 소비기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냉장·냉동 보관창고, 원료·제품 운송 차량 등 온도관리를 강화함

2. 지도·점검 관리방법

- 식품제조·가공업소 중점 점검 대상
 - 연 2회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특별관리업소 등 위반이력업체
 -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
 -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 업소(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 업소 우선 선정)
 -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집단급식소에 식품(케익류, 김치류, 즉석섭취식품)을 납품하는 제조업체
 - 출입·검사면제 업소(사유가 명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)
 - 식품을 환, 분말 등으로 제조하여 유사 건강식품 등으로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
- 수출부적합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제조업소의 지도·점검
 - 주류제조업소: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함
 - 식품 등(첨가물, 기구·용기·포장) 제조·가공업소
 - : 시·군·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, 필요하다면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함

8.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

1. 안전관리 추진방향

-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가 급증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관리 강화
-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패스트푸드,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대한 집중 점검
- 위생 취약시설(PC방, 스크린골프장, 장례식장, 춤이 허용되는 감성주점 등)에 대한 집중 관리
- 소비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식품접객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유지
- 공유주방 업체에 대한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지도·점검 강화
-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, 반복 위반 시 '특별관리업체'로 선정해서 중점 관리
- '단속대상선별시스템'을 이용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단속필요가 높은 업체,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
- 이상기온, 황사철, 미세먼지, 지진, 화산폭발 등 환경변화로 식품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, 푸드트럭 등의 업종에 대해 안전한 식품 취급 및 관리방법 홍보
- 시설개수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

8.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

2. 중점 지도·점검사항

-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여부
 - 식품접객업자는 조리·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
 - 유통·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·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수 없음
- 옥외영업장 운영 시 해당 면적에 대한 신고(변경신고) 여부, 신고된 면적을 초과한 영업 여부, 조리행위* 등 여부, 영업장의 청결관리 여부, 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(난간 등) 적절성 여부, 피난·안전시설 등에 적재물 방치 등 여부
 - 정하지 않은 기준 외의 장소는 조리행위 금지되어 있으나,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 지자체장이 별도 정하는 경우 옥외조리 행위는 허용함
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, '23.5.19)
-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올바른 사용 지도·점검

예

 - 내열성 등이 낮은 플라스틱(스티로폼 등) 용기 사용 시 튀김류 등 고온 음식 사용 주의
 - 튀긴 후 바로 담지 않고 어느 정도 식힌 후 담기 등
- 식품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기구에 대한 사용금지 및 지도·점검 강화
- 손님에게 조리·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,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·조리 또는 보관 여부

8.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

2. 중점 지도·점검사항

■ 뷔페음식점 등에 대한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

-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

>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, 별도의 처리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

예 • 상추, 깻잎, 통고추, 통마늘, 방울토마토, 포도, 금귤 등 야채·과일류

>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,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

예 • 바나나, 귤, 리치 등 과일류
• 땅콩, 호두 등 견과류

> 건조된 가공식품으로서,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·제공하는 경우

예 • 땅콩,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
• 과자류, 초콜릿
• 빵류(크림 도포·충전 제품 제외)

>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·제공하는 경우

예 • 소금, 향신료,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
• 배추김치 등 김치류
• 밥

9.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

1. 식품유통·판매업체 대상업종

- 식품판매업 5종
 - 식용얼음판매업
 - 식품자동판매기영업
 - 유통전문판매업
 -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
 - 기타식품판매업
- 식품운반업 및 식품냉동·냉장업
- 기타 도·소매업
- 무신고 식품 판매·통신판매업자
- 면세점 영업자

2. 안전관리 기본방향

- 형식적 지도·점검을 탈피하고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
- 식품 판매업체의 허위·과대광고 행위 점검
-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신고 식품 판매 행위 점검
- 부정·불량식품이 유통·판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
- 시기별 다소비식품, 집단급식용 식품, 계절별 성수식품 및 지역별 특산식품 등 유통·판매업체 관리 강화
- 소비기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관창고, 진열판매대, 상하차 시 온도관리 강화

9.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

3. 주요 점검내용

- 무신고영업행위 여부
-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
- 표시기준 및 허위·과대광고 위반여부 등
 - 무허가(신고)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·판매행위
 -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·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
- 유통관리 적정여부
 -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·보관·판매행위
 - 냉장·냉동제품, 신선편의식품 등 적정 온도에 보존·보관·운반·진열·판매여부
- 불법 식품 및 수입식품 등 취급·판매행위
 -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·가공·소분 등 제품 및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 등 판매행위
 - 수입식품 등의 용도(구매대행, 외화획득용,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, 연구·조사용 등)외 판매여부
- 표백제, 색소 등 위해물질 처리 및 판매행위
 - 연근, 도라지, 더덕, 밤, 마늘 등에 표백제 및 황산알루미늄 처리
 - 생선, 두부, 묵 등에 색소 및 보존료 처리
-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지속관리
 - 식품(불법 의약품 성분 사용)
 - 주류(디부틸프탈레이트)
 - 김치류(사이클라메이트)
- 냉장·냉동 제품의 온도관리를 위해 기기에 부착된 온도계의 온도를 검증·확인하도록 관리·지도
- 냉장·냉동 운송차량의 보관온도 준수여부 및 온도 임의조작장치 불법 부착 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강화
-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리 강화
 - 영농조합법인 등이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지도·점검

9.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

3. 주요 점검내용

-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
 -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 및 무인점포, 프리마켓 등 신종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, 보존 및 유통기준, 소비(유통)기한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
-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 업체에 대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여부 등 중점 점검
- 대형마트,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PB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 지도·점검 강화
 -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중점 점검
 -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 반드시 재점검